붙임1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양식

<table>
<tr><td colspan="10">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 명</td><td colspan="8">국세청 빅데이터센터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 colspan="2">대진정보통신</td><td>평가기간</td><td>2025.09.29.
~
2025.10.31.</td><td>평가예산</td><td colspan="3">□ 1천만원 미만
■ 1천만원 이상~3천만원 미만
□ 3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
□ 5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
□ 1억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4">빅데이터시스템</td><td colspan="2">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</td><td colspan="2">2025.01.01. ~
2025.12.31.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 및 목적</td><td colspan="8">❍ 세정변화에 부응하는 과학세정 구현
-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납세서비스 향상, 업무 효율화, 공정과세 실현 등 국세행정 혁신을 가속화
- 과세자료와 외부 수집 데이터를 융합하고 머신러닝 등 고급분석기법의 적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세정 지원
❍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및 과세형평 제고
-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절감
- 역외탈세, 편법적 부의 대물림, 고소득사업자 탈루기법 등 탈세수법 지능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 마련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추진성격</td><td>대상여부</td><td colspan="3">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</td><td>추진예산</td><td colspan="2">2,071백만원</td></tr>
<tr><td>추진주체</td><td colspan="3">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총괄팀</td><td rowspan="2">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</td></tr>
<tr><td>추진근거</td><td colspan="3">*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* 국세기본법 제81조의6(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)
*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(과세자료의 범위), 제9조(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), 제11조(비밀유지 의무)
*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*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(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)
* 조세범 처벌법 ‘제3조(조세 포탈 등)’부터 제16조(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)‘까지의 세법 위반자에</td></tr>
</table>

			대한 형벌 규정 *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장 조세범칙조사 *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2장 조세범칙조사 *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		
		신기술 유형	해당없음		
	주요내용	○ 빅데이터 분석과제 개발 - 맞춤형 납세서비스 확충, 업무방식 개선, 탈세대응 고도화 등 국세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과제 분석 및 모델 개발 * 최적의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해 여러 모델을 참조하여 분석 모델을 선정 - '19년부터 개발된 분석과제를 검토하여 신규 분석과제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로직을 파악하고 최신 분석기법에 활용토록 검토 - 납세자 신고자료 및 과제자료 제출법에 의한 수집 자료, 기업 정보, 뉴스 등 정형·비정형 데이터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수행 - 통계분석, 머신러닝, 관계망 분석 등 빅데이터 모델링 수행과 모델링 결과에 대한 검증, 평가, 시각화 등 결과 구현 - 과제수행 성과를 확인하고 우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과제범위를 확장하거나 활용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도출 ○ 분석모델 시각화 및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 - 사용자가 분석결과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 화면 개발 - 업무 처리 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행정시스템(엔티스 등)과 연계			
	운용체계 변경내용 (변경인 경우)	빅데이터 이용한 분석과제 운영 및 신규 분석과제 개발			
개인정보파일개요	파일명	정보주체 수	개인정보 항목	제3자 제공	개인정보 처리 목적
	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 제2항의 적용 예외사항에 따라 등록예외대상 개인정보파일 - 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「관세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				
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	등록예외대상의 개인정보파일로 개인정보 처리흐름은 대외비 사항				

영향평가기준	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	* 고정형/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, RFID, 생체인식정보, 위치정보, 가명정보 관련 개인정보처리하지 않아 5영역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항목 제외
	주요 평가기준	* 개인정보 파일 공개의무는 없으나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 관리가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영향평가 시 확인 * 신규 분석과제에 대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내역과 관리절차 확인 * 빅데이터시스템 계정 및 서버, DBMS 계정 관리 확인 * 데이터 보유기간 및 삭제 관련 절차 확인
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·평가		1. 국세청 개인정보 관리체계 - 국세청 개인정보보호팀에서 관리 - 연간 계획 수립 및 내부 검토 수행 2. 빅데이터센터 개인정보 관리체계 - 개인정보파일 관리 수준 우수 - 내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관리체계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 - 내부 업무만을 위한 시스템으로써 국세청 대표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기준으로 평가 - 법률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 -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·제공 및 제3자 제공 없음 -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관리(빅데이터시스템 운영) 3.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- 접근 권한(최소 3년) 및 접속 로그 저장 - 19년 구축시부터 시스템 운영 관련 로깅 양호 - 개인정보취급자 권한부여 절차 양호 - 악성프로그램 통제 및 물리적 접근방지 수준 우수 - 모든 인프라 자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치하고 있으며, 서비스 수준 관리서(SLA)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- 일부 시스템의 경우 로그인 시 강화된 인증방식이나 관리자 로그인 알림 등 기능 적용이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하여 향후 시스템 고도화 시 상기 접근통제 보안에 대한 강화 방안 반영 필요
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	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	● 일부 시스템 로그인 시 MFA 적용과 전송구간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음. - 대내 서비스 만을 위한 시스템인 빅데이터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증서를 활용한 인증 방식 추가를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및 관리자의 인증방식을 강화하여 접근통제 보완필요. 직접 적용이 어려운 경우, 중계 인증서버 등을 활용한 방식을 고려하여야 함 - 대내 서비스 만을 위한 시스템인 빅데이터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설인증서를 이용한 SSL를 적용하는 경우 비교적 간소하게 전송구간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음. 추후, 내부 도메인 등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적용하는 경우, 인증서 탈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게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음 - 위 보안기능 보완은 빅데이터시스템의 여건상 고도화 시점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, 26년 4분기까지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
	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	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구간이 없어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위험요소를 인지시킬 필요성은 없음.

평가결과	빅데이터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지 않고 기존에 수집한 ○○○ DB를 국세기본법, 조세범 처벌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공평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 및 이용하고 있음.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의무가 없으나 내부 기준에 따라 상세히 개인정보 파일 관리하고 있으며,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도 높음. 다만,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보안조치 강화를 위해 권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 및 관리자 로그인 시 인증방식 강화와 관리자 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이 필요하며, 시스템 고도화 시점에 상기 보안기능을 보완하도록 권고함.